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서울시 응답소(20150415002296)」를 통해 제출하신 공동발의자 대표에 의한 대의원회 개최 여부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조합장 해임상태에서 대의원회 공동발의자 공동대표가 조합장 직무대행에게 대의원회 개최요구를 하였으나 직무대행자는 거절하였고 다시 감사에게 개최를 요구 하였으나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할시 공동발의자 대표에 의한 대의원회 개최여부에 대하여

○ 답변내용

- 대의원회의 소집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귀조합 정관 제24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대의원의 1/3이상 또는 조합원 1/10 이상이 조합장에게 소집요구시에 정해진 기한내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 아울러 조합장이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사가 소집하여야하며, 감사도 소집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의원 소집을 청구한자의 대표가 구청장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귀 조합의 경우 현재 조합장 직무대행 자격유무에 관하여 조합(원)간에 다툼이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항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에 대한 걱정여부 확인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